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25 (2021. 8. 31 ~ 9. 3)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리며, 매주 목요일에 주간입법동향을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ESG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가스터빈'의 개념 구체화 및 수소가스터빈에 대해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계류안	ESG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
	공정거래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고,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함.
공포 법령	형사	④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질산나트륨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표시·광고 심의대상 품목 정비 등.
입법/행정 예고	기업	⑤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 및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의무화.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수소경제 활성화 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 수소터빈이 주목을 받고 있음. 실제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15GW의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를 2040년, 수소가스터빈 사용발전을 2035년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향후 수소가스터빈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대규모의 탄소 감축 및 수소의 수요 창출이 가능해지면서 수소 혼소율이 30%일 때 CO_2의 약 515만톤, 50%의 경우 CO_2의 약 1,061만 톤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380MW 용량의 수소가스터빈은 연간 약 13만대의 수소전기차에 해당하는 수소 사용효과를 창출하여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면서 빠르게 수소경제를 안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또한, 노후화된 가스터빈의 연소 방식을 천연가스와 수소의 혼소로 전환하는 경우 노후가스터빈을 폐기하여 신규설치하는 방식과 비교할 때 그 비용이 크게 절감됨. 이에 수소발전 개념을 연료전지와 함께 수소가스터빈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수소경제 개념을 현실화하고, 수소가스터빈에 대해서도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둠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25조).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Y1K0F8M0D6V1U5Z1R4W2R3H6V4V4		21.08.23. 제안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환경노동위원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	■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님.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제도 상 기후위기 대응 체계는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으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취약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중앙일보 21.08.19. 與 기후위기대응법 단독처리… "2030년까지 최소 35% 감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31738	21.08.25 제안 21.08.25. 법사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의결 (수정가결)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 환경적 ·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 · 촉진 · 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다. 정부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부진·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22조).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바. 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 국제 감축사업,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사. 부·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기후위기 감시·예측,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수산 전환 촉진,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아. 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국민 참여 보장,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자. 정부는 녹색경제·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녹색경영, 녹색기술 연구개발·사업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금융,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표준화·인증, 집적지·단지조성, 일자리창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시책, 순환경제 활성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 차.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운영, 녹색제품 등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N1D0E8N1S8F2K0B3I4V4I7F8I4G1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부당이득이 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부당이득만 취득하였다고 보아 수사기관이 청구한 몰수·추징 또는 과징금 부과를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기본적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3조의2 신설).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M0U0O6C1I6F1S4T0A3M0S3G7N1E5	헤럴드경제 21.08.27. 부당이득 산정 기준 법제화 '먼 길' [헤럴드 뷰-저조한 추징금 환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27000491	21.06.16. 제안 20.07.29.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21.02.23. 소위 상정/ 제안설명 21.03.17. 소위 상정/ 제안설명 21.03.22. 소위 상정/ 제안설명 21.04.26. 소위 상정 21.06.23. 소위 상정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기관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표시 · 광고 중지명령을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으로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의 경우에도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 · 광고의 자율심의의 대상인 특수용도식품을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식품등의표시 · 광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합뉴스 21.08.24. 식육가공품 보존제 아질산나트륨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4031200530?input=1195m	21.08.24. 시행

4. 입법/행정 예고 법안

번호	소관기관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보고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 제안이유 2020. 12. 29. 전부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보고하는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021. 6. 4. 입법예고)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 및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관련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며, 지주회사 등의 연간 사업보고 관련 제출서류 및 방식 등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운영 관련 보고절차 마련 1)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안 제14조제1항, 별지 서식 제11호 신설) 2)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의 투자 현황 및 출자내역 등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보고절차, 제출서류 양식 등을 규정(안 제14조제1~2항, 별지 서식 제12~14호 신설) 나. 벤처지주회사 내부거래 현황 보고 및 사전신청 절차 관련 1) 벤처지주회사가 매년 사업보고시 제출해야 할 내부거래 현황 작성양식 및 작성지침 마련 (안 제11조, 별지서식 제10호 신설) 2)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시 제출해야 할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첨부서류 종류 규정(안 제15~18조, 별지서식 제15호 신설)	뉴시스 21.08.27. 일반지주사의 CVC 소유 허용에 따른 보고·신청절차 마련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7_0001562454&cID=10401&pID=10400	21.08.27. ~ 21.09.17.

번호	소관기관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다. 지주회사 사업보고 제출서류 현실화 및 제출방식 개선 등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대신 세무조정계산서(또는 결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4조제2호) 2) 지주회사는 매년 사업보고 시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법인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문화(안 제11조 단서 신설) 3) 별지서식상 작성지침 및 항목 등을 명확히 하고, 그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목, 용어, 조문번호 등 변경사항을 고시에 반영하며, 조문상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36027?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0286956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기사 및 칼럼

[서울경제][사설]산업보건의 690인데 4,600개 업체에 의무 채용하라니(2021.08.30)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E05ND8B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광업•건설•화학제조 업종의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최소 1명씩 둘 것을 규정함. 산업보건의를 채용해야하는 기업은 4,664곳 이지만 현재 활동 중인 산업보건의는 280여 명에 불과함. 2018년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춘 직업환경의학•예방의학 전문의를 다 포함해도 690명에 그침. 광업, 의약품 제조, 기계 제조 업종의 5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한다는 규정도 준수하기 힘든 상황.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6월 발의 당시부터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고 기업 현실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법원행정처도 과잉금지 등 헌법의 기본 원칙들을 위배할 수 있다고 우려했을 정도.

[한국경제][기사]고용부, 중대재해법 '가이드북' 내놨찌만…"여전히 모호"(2021.08.2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295692i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을 앞두고 가이드북을 내놨지만 "규정이 모호하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옴. 고용부가 제시한 핵심 요소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이지만 기업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평가.

[뉴시스][기사]건설업계 산업재해 사망자 56%가 하청 근로자(2021.08.26)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6_0001560852&cID=10201&pID=10200

주요내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983건, 1016명) 가운데 절반 이상(55.8%)이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남.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하청 근로자에 비중이 커짐. 3억원 미만 현장의 산재 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는 17.5%였지만, 3억~120억 미만 현장에서는 58.6%를 차지함. 12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자 중 하청근로자는 89.6%에 달함.

산재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는 △안전 시설물 불량 △보호구 미착용 △작업계획 불량 △관리체제 미흡 △작업 방법 불량 등.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재 예방의 시작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이고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에서 출발한다”며 “산업안전이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정받고 기업의 목표와 비전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함.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ESG 본부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공정거래부문



구상모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형사부문



김부식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81
E : bskim@draju.com



김진동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5
E : jdkim2@draju.com

기업부문



안호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4
E : hbahn@draju.com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8,10~16층
T. 02-563-2900 E.pr@draju.com W. www.draju.com